

학교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학생 및 교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 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1.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2.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3.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5. 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제4조 (시설물 관리일반)

관리주체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4. 상수도 관로 이음부

제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수도	-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건축물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제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초기점검의 목적은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나.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

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정밀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시설 일상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종결	미비
▷ 건물 주변 지반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외벽 치장벽돌(적벽돌)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치장벽돌의 백화현상 확인		
▷ 드라이빗모서리, 바닥부분 파손부위를 확인한다		
▷ 증축된 건물 접합부의 균열여부를 확인한다		
▷ 옥상 슬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난간 등의 흔들림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건물과 건물의 연결된 옥상 조인트 누수 여부를 판단한다		
▷ 패널지붕 처마홈통의 누수를 확인한다		
▷ 교실 기둥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창문의 여닫음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 천정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 계단 핸드레일이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 창문, 문틀의 틈새여부를 확인한다		
▷ 플로어링 바닥이 부풀어 오른 곳을 확인한다		
▷ 철골구조물 도장상태를 확인한다		
▷ 연결통로 지붕의 코킹 및 연결철물 부식정도를 확인한다		
▷ 기타확인		

학교시설물(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조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의 형태)

1. 전기안전관리사 채용 및 상주근무
2.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용역계약
계약용량 75KW이상 전력시설물, 75KW이상 발전기등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 중인 전기 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대행.
3.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현황
 - 가. 한국전기안전공사
 -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법인)
 - 다.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자(개인)
4.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의무점검 횟수
 - 가. 75KW 미만의 저압수용설비 (대행업체 선임의무 없음)
 - 나. 75KW 이상의 저압수용설비 : 월 1회
 - 다. (특) 고압설비 ~999KW 대행업체 선임관리
 - 라. (특) 고압설비 1000 ~ 전기안전관리사 채용 및 상주근무.
5. 전기안전점검 사항
 - 가. 점검업체에서 전기실 수변전설비 점검사항.
 - » 전기실 및 특고압기기 외함 청소상태.
 - » 특고압기기 및 배전반 차단기의 내용연수 경과 여부.
 - » 유압식 특고압기기의 누유 및 팽창여부.
 - » 누전경보기 누전 검출 여부.
 - » 배전반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 나. 점검업체에서 기계실 동력반 점검사항.
 - » 제어기기 정상작동 여부.
 - » (소방)펌프의 정상 작동여부.
 - » 동력기기(펌프, 펜)의 누전 발생여부.
 - » 콘덴서의 누유 및 팽창여부.
 - » 제어기기 및 동력기의 부식, 노후 여부.
 - 다. 점검업체에서 각 층 분전반 점검 시 확인사항.
 - »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및 단자부 정상 접속 여부.

- »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및 선로별 누전 발생 여부.
- » 함 내에 물기침입 또는 금속물질 방치 여부.

6. 전기시설 일반 점검사항

가. 매일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시 내용.

- » 건물 각 실별 전기안전 순찰실시 및 파손된 시설 개.보수.
- » 전기시설 이상발생시 업체신고 및 상황보고.
- » 퇴실후 차단기확인 및 기록부 작성.

나. 매월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 월 1회 차단기 작동시험 및 전기 사용량 측정 및 분석.
- » 업체 정기점검 시 입회 및 지적된 전기시설은 신속하게 개 . 보수한다.
- » 전기제품 보급시 사전에 전문가와 안전상담을 한다.

다. 매년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전기계약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력기기는 교체하며 미사용 전기는 차단한다.

점검업체를 통한 수변전설비 청소 및 정밀점검 , 선로 누전여부 측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시설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종 결	미 비
식당 휴게실	배기후드 및 환풍기 작동여부		
	식기세척기 등 급식전기제품 외관 및 설치상태		
	콘센트 및 차단기 상태		
	기타		
대강당	냉, 난방기 외관 및 설치상태		
	퇴관시 차단기 차단여부 확인		
	냉 난방기, 조명기구, 안정기 상태확인		
	기타		
강의실 관리실	퇴실 후 전원차단 및 제품주위 환경확인		
	플러그 접속상태 및 가연물질 여부확인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확인		
	기타		
복 도 화장실	정수기, 자판기 설치상태확인		
	유도등 및 분전함 상태확인		
	콘센트상태 및 전선배관 파손여부 확인		
	환풍기 상태확인 및 장애물 확인		
	난방기 물기 침입 및 누전차단기 등 확인		
	기타		
전기실 기계실	일반인 출입금지 및 시건장치 확인		
	누전경보기, 검출표시 점등 여부 확인		
	비상발전기 상시 작동 및 배수펌프 작동 여부 확인		
	기타		

학교시설물(소방)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교내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① 총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총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총장은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총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총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뉘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총장의 소방활동)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①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위소방대는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① 총장은 본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당일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의 실시)

구 분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점검자	방화관리자 또는 업무대행자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15일 이내 관한소방서 제출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확인사항

- ① 화재수신반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② 경보상태 및 각 회로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③ 발신기 외관 및 내부선로 상태를 확인한다.
- ④ 각 실의 화재감지기 동작상태 점검을 확인한다.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동작상태 점검을 확인한다.
- ⑥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⑦ 소화수조의 유효수량 보유 및 저수위경보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⑧ 주변 장애물 적재 여부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이 작동 할 때 조치사항

- ① 각 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 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를 분리한다.
- ② 화재 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해당 지역에서 화재발생유무 확인.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시도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을 원상 복구한다.
- ③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방송이 동작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비상방송 스위치를 눌러서 방송을 정지시키거나, 비상방송 앰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 ④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 수신반 펌프의 기동 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펌프를 점검한다.
⇒ 수신반에 펌프 정지 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 ⑤ 각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 신호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복구한다.
- ⑥ 피난구 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⑦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시킨다.
⇒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밸브실(유수검지장치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 ⑧ 각 층의 소화전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 소화펌프실로 신속히 이동한다. 소화펌프 토출측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근다. 지하층 또는 1층 소화전 호스를 외부로 연결하여 배관 내 물을 배수시키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보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의 일반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종결	미비
▷ 교실에는 1개 이상, 복도에는 20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게이지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 구내식당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소화전함 호스의 노후 여부를 확인한다.		
▷ 소화전함내 호스가 2개 이상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화재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0.8m~1.5m사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소화펌프 운전스위치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자동동작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정상 상태를 확인한다.		
▷ 화재수신반이 설치된 곳은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 각층 경보설비 동작상태 및 소화전 표시등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각 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노후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계단 출입문의 계단상태 및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경로 유도 및 피난구유도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강의실마다 또는 층마다 대피경로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상시 대피 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전열기, 가스렌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